주주님께

2022 년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상법 제 365 조 및 당사 정관 제 20 조의 규정에 의거 2022 년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아 래 -

1. 일 시 : 2022 년 12 월 20 일 (화) 오전 09 시

2. 장 소 :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299(신천동) 10 층 대회의실

3. 회의목적사항

가. 부의안건

제 1 호 의안 : 이사 선임의 건

제 2 호 의안 : 감사 선임의 건

제 3 호 의안 : 정관 일부 변경의 건

4. 주주총회 소집통지・공고사항

주주총회 소집통지・공고사항은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.

5.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서는 주주총회의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 등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.

2022 년 12 월 05 일

쌍 용 건 설 주 식 회 사

대 표 이 사 김 석 준

(직인생략)

[별첨]

정관 신·구조문 비교표

현 행	개 정(안)
제 23 조(총회의 정족수와 결의 방법) **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 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**	**제 23 조(총회의 정족수와 결의 방법)** **① 주주총회의 의사정족수는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주의 출석으로 한다.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가 유효하게 개회되거나 성립할 수 없다.** **② 법령에 따라 과반수를 초과하는 정족수가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하고, 주주총회의 결의는 의사정족수가 충족되어 적법하게 소집된 주주총회에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.**
제 26 조(임원의 수와 선임방법)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,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 ②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③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	**제 26 조(임원의 수와 선임방법)** ①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, 감사는 1명 이상으로 한다. ② 이사 및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. **두바이투자청(Investment Corporation of Dubai, "소수주주")은 이사 1인을 임명 및 해임할 권한을 갖고, 아본데일 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는 그 외 모든 이사를 임명 및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.** ③ 이사와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

한다. 그러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④ 이 회사는 상법 제 382 조의 2 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아니한다.	한다. 그러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④ 이 회사는 상법 제38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지 아니한다.
제 30 조(이사회의 소집)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 대표이사가 유고시는 제 32 조의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각 이사 및 감사에게 **회일 2 일전**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	**제 30 조(이사회의 소집)**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 다만 대표이사가 유고시는 제 32 조의 제 3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. ② 이사회를 소집함에 있어서는 각 이사 및 감사에게 **회일 5 영업일 전**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제31조(이사회의 결의 및 의사록 작성)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**다만, 가부동수일때에는 의장이 이를 정한다.**	**제 31 조(이사회의 결의 및 의사록 작성)**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. **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소수주주가 지명한 이사의 찬성 없이 채택할 수 없다.** **1. 이 회사와 관련한 파산, 회생 기타 유사한 법령에 따른, 해산, 청산, 또는 이와 유사한 절차 내지 소송의 개시** **2. 이 회사의, 계열회사와의 경우를 제외한, 여하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합병, 분할, 중요한 영업의 양도 또는 중요한 영업의 임대 개시 또는 효력 발생**

	3. 이 회사 정관 제 20 조 제 4 항, 제 23 조, 제 24 조, 제 26 조 제 2 항, 제 30 조 제 2 항, 제 31 조 제 1 항 및 제 3 항의 수정 또는 삭제, 또는 본 정관 제 20 조 제 4 항, 제 23 조, 제 24 조, 제 26 조 제 2 항, 제 30 조제 2 항, 제 31 조 제 1 항 및 제 3 항에 따른 소수주주의 권리를 중대하고 부정적으로 변경하는 이 회사 정관 조항의 신설 **4. 건설업인 이 회사의 주요 사업목적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것** **5. 각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기존 주주에게 배정하는 것 이외의 방법으로 신주,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것**
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.	②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이를 본점에 보존 비치한다.
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,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이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	③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,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